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홈페이지(http://hillstate-thesharp-sangsaengpark.co.kr)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공고문 전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주택과 - 3234호(2024.01.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8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최고 35층, 12개동 총 1,6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82세대(일반/기관추천) 127세대, 다자녀가구 164세대, 신혼부부 229세대, 노부모부양 48세대, 생애최초 1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 000016	01	084.5130A	84A	84.5130	30.6026	115.1156	54.6076	169.7232	49.7007	973	97	97	175	29	87	485	488	33
		02	084.8908B	84B	84.8908	30.4785	115.3693	54.8517	170.2210	49.9229	126	12	12	22	3	11	60	66	4
		03	084.1259C	84C	84.1259	31.2521	115.3780	54.3576	169.7356	49.4731	183	18	18	32	5	16	89	94	6
		04	127.8495	127	127.8495	35.0579	162.9074	82.6093	245.5167	75.1862	374	-	37	-	11	-	48	326	12
		05	139.4748P	139P	139.4748	52.6065	192.0813	90.1211	282.2024	82.0229	6	-	-	-	-	-	6	-	-
		06	178.8663P	178P	178.8663	53.3637	232.2300	115.5736	347.8036	105.2072	6	-	-	-	-	-	6	-	-
합계											1,668	127	164	229	48	114	682	986	5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주거전용 면적적용)	동·호 구분	층구분	세대 수	총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5. 06.25.	2025. 10.27.	2026. 02.25.	2026. 06.25.	2026. 10.26.		2027. 02.25.
84A	201동 (1호) 202동 (3,4호) 203동 (2,3호) 204동 (1,2호) 205동 (1,2,3,4호) 206,210,211,212동 (2,3,4,5호) 207,208동 (4호) 209동 (1,3,4,5호)	2층	33	224,969,723	318,930,277	-	543,900,000	10,000,000	4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163,170,000
		3~5층	99	227,451,463	322,448,537	-	549,900,000	10,000,000	4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164,970,000
	201동 (1호) 206,210,211,212동 (2,3,4,5호) 208동 (4호) 209동 (3,4,5호)	6~19층	294	229,519,579	325,380,421	-	554,900,000	10,000,000	4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166,470,000
		20층 이상	216	231,587,696	328,312,304	-	559,900,000	10,000,000	4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167,970,000
	202동 (3,4호) 203동 (2,3호) 204동 (1,2호) 205동 (1,2,3,4호) 207동 (4호) 209동 (1호)	6~19층	168	231,587,696	328,312,304	-	559,900,000	10,000,000	4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167,970,000
		20층 이상	163	233,242,189	330,657,811	-	563,900,000	10,000,000	4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169,170,000
84B	201,209동 (2호) 207,208동 (3호)	2층	4	223,728,853	317,171,147	-	540,900,000	10,000,000	4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162,270,000	
		3~5층	12	226,210,593	320,689,407	-	546,900,000	10,000,000	4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164,070,000	
	201,209동 (2호) 208동 (3호)	6~19층	42	228,278,709	323,621,291	-	551,900,000	10,000,000	4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165,570,000	
		20층 이상	38	230,346,826	326,553,174	-	556,900,000	10,000,000	45,690,000	55,690,000	55,690,000	55,690,000	55,690,000	55,690,000	167,070,000	
84C	203,206,210, 211,212동 (1호) 205동 (5호)	2층	6	224,969,723	318,930,277	-	543,900,000	10,000,000	4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54,390,000	163,170,000	
		3~5층	18	227,451,463	322,448,537	-	549,900,000	10,000,000	4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164,970,000	
	203,210, 211,212동 (1호)	6~19층	56	229,519,579	325,380,421	-	554,900,000	10,000,000	4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166,470,000	
20층 이상		43	231,587,696	328,312,304	-	559,900,000	10,000,000	4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167,970,000		
127	205동 (5호) 206동 (1호)	6~19층	28	231,587,696	328,312,304	-	559,900,000	10,000,000	4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167,970,000	
		20층 이상	32	233,242,189	330,657,811	-	563,900,000	10,000,000	4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56,390,000	169,170,000	
	201동 (3,4호) 202,207,208동 (1,2호) 203동 (4,5호) 204동 (3,4호)	2층	12	303,544,797	430,322,912	43,032,291	776,900,000	10,000,000	6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233,070,000	
		3~5층	36	328,624,064	437,523,578	43,752,358	789,900,000	10,000,000	6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78,990,000	236,970,000	
139P	202동 (3호) 203동 (2호) 204동 (1호) 205동 (1,3호) 209동 (4호)	2층 이상	6	551,382,405	846,925,086	84,692,509	1,483,000,000	10,000,000	13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444,900,000	
		20층 이상	6	717,577,910	1,102,201,900	110,220,190	1,930,000,000	10,000,000	183,000,000	193,000,000	193,000,000	193,000,000	193,000,000	193,000,000	579,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201동 101호 홍길동 → 2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대우은행 505-10-249070-5, 예금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됨.
- 세대별 부여된 가상계좌의 입금 불가(전산 오류, 점검 등) 시, 상기 모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미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연체 등)은 계약자가 부담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차, 2차) 납부계좌	대우은행	505-10-249070-5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정확 확인)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정	2024년 02월 05일 (월)	2024년 02월 06일 (화)	2024년 02월 07일 (수)	2024년 02월 15일 (목)	2024년 02월 17일 (토) ~ 2024년 02월 24일 (토)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치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10:00 ~ 17: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http://hillstate-thesharp-sangsaengpark.co.kr/)를 참조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장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림).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경기·청양권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공주택신청자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례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례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체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 및 외국인 포함(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접수가 가능함)
- ※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우선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인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체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지체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체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체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 관련